

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

공영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691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3. 29.

라. 회부일자 : 2023. 4. 03.

### 2. 제안사유

- 중랑구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에 건립에 따라, 市공영주차장 부대시설 1층 상부 증축(영구시설물 축조)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대상지 현황

- 주차장명 :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

- 위치/면적 :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8-2(59,665  $m^2$ )
- 소유권 : 유수지(중랑구), 공영주차장·부대시설(서울시)
- 위치도 및 현황사진

	
위치도	현황사진

#### 나.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개요

- 사업목적 : 중랑구민의 문화체육복합센터 수요충족 및 편의증
- 사업기간 : 2019년 ~ 2026년
- 사업규모 : 연면적 8,936  $m^2$  증축(홈플러스 상부 2, 3층)

※ 기존 부대시설 면적 : 10,461  $m^2$ (홈플러스, 관리동, 기계·전기·물탱크·감시실)

항목	층수	면적( $m^2$ )	세부시설용도	비고
	계	18,812.17		
증축	지상3층	769.00	다목적체육관(관람석), 기계실	증축 후 중랑구 소유
	지상2층	8,167.00	다목적체육관, 사회복지시설, 공공도서관, 청소년 문화의 집	
기존	지상1층	9,876.17	주차장 부대시설(판매시설)	서울시 소유

- 사업예산 : 36,537백만원(국비 3,283, 시비 11,145, 구비 22,109)
  - (시비지원부서)체육진흥과(6,061), 서울도서관(2,110), 청소년정책과(2,974)

#### 다. 사전절차

- 서울시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('23.3.16.) 심의 결과 : “적정”

#### 라. 기대효과

-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에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편의 증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○ 「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4조의2

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마.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

- 서울시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('23.3.16.) 심의 결과 : “적정”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동의안은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부대시설에 영구시설물인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등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#### ※ 참고 : 관계 법령

#####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

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마.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

#####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 나. 검토의견

### ■ 면목유수지 일반현황

-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은 ‘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8-2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주차장 1,008면 등을 포함한 연면적은  $59,655m^2$ 에 이르고 부대시설로는 홈플러스가 입점되어 있으며 시설물 소유권과 관련하여 유수지는 중랑구,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은 서울시 소유임

### ※ 참고 : 위치도 및 현황사진

구 분	주 요 내 용		위 치 도
위치/연면적	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8-2번지 / $59,655m^2$		
부대시설 규모	지상 1층		
시설 연면적	주차장	$44,560m^2$	소계 $59,665m^2$
	부대 시설	$10,461m^2$	
	기타	$4,644m^2$	
주차면수	1,008면		
부대시설	홈플러스		

### ■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연혁

-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은 민자사업으로 (주)대우가 건설하여<sup>1)</sup>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<sup>2)</sup> 받은 이후 무상사용수익권이 (주)대우에서 홈플러스스토

1) 공사비 : 371억원 / 공사기간 : 1992.09.25.~1999.08.28.

2) 1999.9.3. : 무상사용허가(주식회사 대우)

어즈(주)로 변경되었으며<sup>3)</sup>, 홈플러스스토어즈(주)는 주차장 1,008면, 부대 시설 면적 10,461m<sup>2</sup> 등을 포함한 연면적 59,665m<sup>2</sup>의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을 2019년 9월 3일까지 무상사용 한 바 있음

- 서울시는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<sup>4)</sup>과 관련지침<sup>5)</sup>에 따라 관리이행계획을 수립<sup>6)</sup>한 바 있고, 서울특별시 제289회 임시회 당시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대행(위탁) 동의안<sup>7)</sup> 의결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동 주차장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주차장 일부<sup>8)</sup>는 중랑구청에 위탁한 바 있음
- 또한, 부대시설인 홈플러스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'공유재산법') 제20조<sup>9)</sup> 등에 따라 일반경쟁입찰<sup>10)</sup>에 따른 최고가 낙찰을 통해

3) 1999.09.09. : 무상사용수익권 변경승인 [주)대우 → 한국까르푸(주)]

2006.12.06. : 대표자 및 상호변경 신고 [한국까르푸(주) → (주)이랜드리테일]

2008.10.22. : 대표자 및 상호변경 신고 [(주)이랜드리테일 → 홈플러스테스코(주)]

2015.11.06. : 대표자 및 상호변경 신고 [홈플러스테스코(주) → 홈플러스스토어즈(주)]

4) 제7조(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·공고 등)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공고(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5)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(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)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설의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

2. 제1항 각 호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여부

6) '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인수·관리 계획' 주차계획과-8248(2019.6.28.)

7) '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(위탁) 동의안(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)' 의안번호(제996호), 제출일(2019.8.7.) 회부일(2019.8.13.) 상정의결(2019.8.28.) \*처리결과(원안가결)

8) '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현황' 홈플러스 부설주차장 441면, 중랑구 위탁 567면 총 1,008면

9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낙찰자 결정)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

홈플러스스토어즈(주)가 낙찰받아 3년('19.9.4~'22.9.3.)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후 공유재산법 제21조<sup>11)</sup>에 따라 운영기간을 5년 갱신<sup>12)</sup>하여 총 8년간<sup>13)</sup> 사용료를 내며 운영 중에 있음

### \* 참고 : 부대시설 홈플러스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금 현황

기 간	수익금	근 거	비 고
'19.9~'22.9	약 20억 * 3년 = 약 60억	'공유재산법' 제20조 등	3년 사용 허가
'22.9~'27.9	약 25억 * 5년 = 약 125억	'공유재산법' 제21조 등	5년 갱신

### ■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검토

- 동 동의안은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위치한 홈플러스 건물 상부에 2, 3층을 증축하여 중랑구청 소유<sup>14)</sup>의 영구시설물인 문화체육복합센터<sup>15)</sup>를

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,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- 10) '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대형마트 운영사업자 선정계획'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시설운영처(2019.4.)  
 11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다만,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 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.

- 12) '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부대시설 사용허가 갱신 결과보고' 교통시설운영처-11111(2022.9.2.)  
 '공유재산 유상[갱신] 사용허가서('22.08.24.)  
 13) 홈플러스 8년간(공개입찰: 3년, 갱신 5년) 수익금 : 약 185억  
 - 19.9~22.9(공개입찰, 3년) : 연간 약 20억 \* 3년 = 약 60억  
 - 22.9~27.9(갱신, 5년) : 연간 약 25억 \* 5년 = 약 125억  
 14) '[면목유수지 문화·체육복합센터 건립]을 위한 합의서(2023.04.)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& 중랑구청장 류경기  
 - 제4조(소유권) ① 제2조 제3항의 영구시설물 소유권은 "중랑구"에 귀속된다.  
 15)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개요  
 - 사업기간(2019년~2026년), 사업규모 홈플러스 상부 2·3층(연면적 8,936m<sup>2</sup>), 사업예산(36,537백만원)

건립하기 위해 사전절차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

해당 계획은 서울시 ‘2030 지역생활권계획’<sup>16)</sup>에 따라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통해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·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
※ 참고 : 복합센터 건립(안)<sup>17)</sup>

문화·체육 복합센터	시설 구성		
	3층	체육센터	다목적체육관 - 농구, 배구, 배드민턴 등 부대시설 : 안내데스크, 샤워실
	2층	공공 도서관	오픈 스페이스 열람실
		청소년 문화의집	동아리실, 강의실, 음악연습실, 실습실, 멀티미디어실, 사무실
		육아종합 지원센터	열린육아방, 프로그램실, 요리체 험실, 시간제보육실, 주유실, 사 무실, 상담실

-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<sup>18)</sup> 및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4조의<sup>219)</sup>에 따른 공유재산심의<sup>20)</sup>를 이행하여 행정적인 절차와 조건은 완료한 것으로 보임

- 또한 공유재산법 제13조<sup>21)</sup>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

16) ‘면목, 응암, 오류·수궁, 독산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·시행’ 전략계획과-8902(2019.10.2.)

17) ‘면목유수지 문화·체육 복합센테 건립’ 중랑비전추진반-3343(2019.12.30.)

18) ‘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알림’ 시설계획과-1645(2023.2.15.)

- 조건부 가결: 공유재산 심의 및 시의회 동의 후 결정고시 절차 이행 등

19)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4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) ①시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마.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

20) ‘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’ 재산관리과-3577(2023.3.23.)

2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량·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

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<sup>22)</sup>에 따라 예외적으로 “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능” 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서울시와 중랑구가 '23년 4월 합의서<sup>23)</sup>를 작성한 만큼 동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[별첨1 참조]

- 동 동의안을 통해 문화·체육시설이 부족한 중랑구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 및 확충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
- 다만, 시설 증축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<sup>24)</sup> 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 부대시설 운영자인 홈플러스스토어즈(주)와 서울시설공단, 중랑구가 사전에 부대시설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 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
- 이 밖에 유수지 상부에 있는 홈플러스에 2, 3층을 증축하는 만큼 공사 전·후 건축물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홈플러스 운영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, 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

---

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22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 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23) 「면목유수지 문화·체육복합센터 건립」을 위한 합의서(2023.4)

24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0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\*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㎡당 1대

부서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임

- 또한, 최근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시설물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자치구의 부지확보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근본적으로 자치구와의 토지교환 및 시유지 매입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## [별첨 1]

『면목유수지 문화·체육복합센터 건립』을 위한

# 합 의 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중랑구(이하 “중랑구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-2번지 지상 서울시 소유의 주차장 부대 시설에 중랑구가 문화·체육복합센터(이하 ‘영구시설물’이라 한다)를 증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합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-2번지 지상 “서울시” 소유의 주차장 부대시설 상부에 “중랑구”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)** 본 합의의 대상 토지, 건물 및 영구시설물은 아래와 같다.



① 토지

-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-2 (지목 : 유수지, 소유권 : 중랑구)

② 건물

-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-2 주차장 부대시설 9,876.17m<sup>2</sup>  
(소유권 : 서울시)

③ 영구시설물

- 규모 : 연면적 8,936m<sup>2</sup> (주차장 부대시설 수직 증축 2, 3층)

[ 주요시설 : 다목적체육관(4,606m<sup>2</sup>), 공공도서관(1,856m<sup>2</sup>),  
청소년문화의집(1,125m<sup>2</sup>), 사회복지관(1,349m<sup>2</sup>) ]

- 용도 : 문화·체육복합시설

- 건립목적 : 중랑구 내 부족한 생활 SOC시설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제3조(시설의 신설)

- ① 영구시설물 건설공사는 “중랑구”에서 시행한다.
- ② “중랑구”는 영구시설물을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 문제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③ “중랑구”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등에 관한 계획서를 “서울시”에 제출하여야 하고,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공사 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“서울시”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(소유권)

- ① 제2조 제3항의 영구시설물 소유권은 “중랑구”에 귀속된다.
- ② “서울시”와 “중랑구”는 제2조 제2항의 주차장부대시설과 제2조 제3항의 증축되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권을 설정한다.

### 제5조(영구시설물 관리 · 운영)

- ① “중랑구”는 영구시설물 건설공사 완료 후 제2조 제3항의 건립목적에 맞게 문화 · 체육복합센터로 영구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한다.
- ② “중랑구”는 영구시설물의 관리 · 운영비 일체를 부담하며, 영구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### 제6조(중도해제 · 해지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서울시”와 “중랑구”는 본 합의를 중도 해제 · 해지(이하 “해제 등”이라 한다)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영구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
  2. 영구시설물의 노후화나 기능저하 등으로 철거가 결정된 경우
  3.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
  4. “서울시” 와 “중랑구” 가 상호 합의한 경우
- ② “서울시” 는 “중랑구” 가 본 합의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합의를 해제 등을 할 수 있다.
- ③ “중랑구” 는 “중랑구” 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 대하여 “서울시” 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, “서울시” 는 “서울시” 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등에 대하여 “중랑구” 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# 제7조(원상복구 등)

- ① “서울시” 와 “중랑구” 가 제6조에 따라 본 합의를 해제 등을 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“중랑구” 의 비용으로 ~~축조비전의~~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.
-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“중랑구” 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“서울시” 가 원상복구 후, 그 비용을 “중랑구” 에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여부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하여 “서울시” 와 “중랑구” 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#### 제8조(합의의 해석)

본 합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합의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고, 규정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 제9조(합의의 효력 등)

- ① 본 합의는 제2조 제3항의 영구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의회 측조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  - ② 본 합의를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“서울시” 와 “중랑구” 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23. 04.



서울특별시
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서울특별시 중랑구

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

중 랑 구 청 장      류 경 기